규정하면서, 동조 제2항에서는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,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에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은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서 자동차 등록면허 관련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.

3) 개정조문 및 해설

○ 자동차 면허세 폐지 - 영 별표 개정

구 분	개 정 전	개 정 후
제1종	22. 자가용자동차등록. 다만, 3,000씨씨 이상 승용자동차에 한한다.	<삭제>
제2종	22. 자가용자동차등록. 다만, 1,600씨씨 이상 3,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한다	<삭제>
제3종	22. 자가용자동차등록. 다만, 1,400씨씨 이상 1,6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한다	<삭제>
제4종	22. 자가용자동차등록. 다만,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와 1,4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,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	<삭제>
제5종	2. 이륜자동차 사용. 다만, 125씨씨 이하는 제외한다	<삭제>

3. 자동차 관련세제개편에 따른 주행세율 인상

1) 배 경

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로 연간 약 5,248억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손이 있을 것으로 추계 되나,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이에 대한 보전 없이 지방재정에 자체흡수하기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, 지방세중 거래과세인 취득세·등록세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인상하여 보전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하므로 주행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